

2023년
응암1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결과보고서



응암1동 주민자치회

2023년도
응암1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결과보고서



응암1동 주민자치회

목 차

인사말	02
응암1동 현황	04
응암1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06
응암1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07
2023년 상반기 감사 보고	11
2023년 응암1동 주민자치회 주요 활동 돌아보기	14
2023년 응암1동 주민자치회 회계현황 자료	22
2023년 동(洞) 참여예산사업 추진 결과보고	24
2023년 제3회 주민총회 결과보고	34
2023년 응암1동, 동(洞) 지역사업	37
부록 응암1동 주민총회 공고문	46
부록 응암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47

주민자치회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주민자치회장 이광희 인사드립니다.

지난 2023년 주민자치회를 돌아보니 작은 소소한 일부터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크나큰 일들까지 많은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갑니다.

우리 마을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바로 응암1동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민자치 위원님들과 지역 단체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는 건전한 재정 민주주의의 꽃이며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치의 지역을 위한 봉사입니다.
항상 내가 살고있는 마을을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 늘 의제 밭굴에 힘쓰고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서로 숙의하고,
협의하면 앞으로 더 발전되는 응암1동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 달에 두 번 요리 만들기 재능기부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만든 반찬을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나누었던 요리만들기 사업,
생명을 살리는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자 연속사업으로 진행하였던 헌혈캠페인, 지역주민들과 함께 전통 장을 만들어
어려운 가정에 나눠주는 전통 장 만들기 사업, 노령화 시대를 반영하며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함께 만들어봤던 연극 “간병인”
마을 마당공원 앞 바닥 LED 도로표지병을 설치한 사업, 은평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설치한 옐로카펫 사업 등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응암1동을 위해 함께 즐겁고, 보람되게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포수마을 축제, 제3회 주민총회, 워크숍, 자매결연지 방문 등 뜻과 마음을 하나로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과 지역
직능단체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 나은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장 이광희

동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응암1동 동장 옥유관 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마을의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이광희 주민자치회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응암1동 주민자치회에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현대사회 가족 간병의 현실과 아픔의 문제를 다룬 창작 연극 공연도 했고, 우리 동에서 시작한 헌혈 캠페인을 전 동에 확산시키는 계기도 마련하고 어머님들의 요리 재능 기부를 통한 나를 도닥이는 요리 도전기 및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알리기 위한 장 담그기 행사 등을 통해 주위의 이웃에게 나눔의 온정을 전하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사업과 활동들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더해, 응암1동 주민총회와 제11회 포수마을 축제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참여와 노력,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모든 사업이 응암1동 주민분들이 제안하고 투표하여 선정된 사업이라는데 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도로표지병 설치 및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옐로카펫 사인 블록 설치처럼 주민분들이 우리 동네 최우선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하여 주신 덕에 안전하고 살기좋은 응암1동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활동과 행사들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 유관기관, 직능단체들 간의 화합과 소통 및 마을공동체 형성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응암1동은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참여하는 응암1동, 행동하는 응암1동”으로 더욱 발전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암1동장 옥유관

응암1동 현황

동 일반현황

(2023.12.31.기준)

면적	행정구역		인구수			세대수
	통	반	계	남	여	
1.2km ²	33	239	32,658	15,260	17,398	14,075

복지 수요

(2023.12.31.기준)

구분	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세대	4,270	950	97	1,730	253	1,240
인원	5,010	1,377	202	1,730	343	1,358

주요시설

(2023.12.31.기준)

공공기관	학교	복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	종교시설	금융기관	공원
4	3	3	13	7	2	34	7	5

직능단체

합계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캠프	청소년지도협의회
186	53	33	25	37	12	11	16

※ 대한적십자사 응암1동지회(20), 생활안전협의회(52), 자율방법대(32), 청소년육성회(35), 새마을지도자협의회(13)

응암1동 '자치회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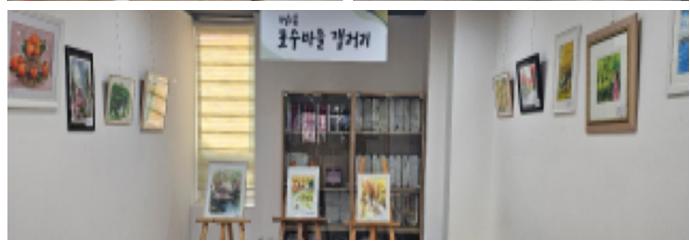
지층

공유주방, 창작실



2층

포수마을 갤러리
주민자치회 사무실
문화의집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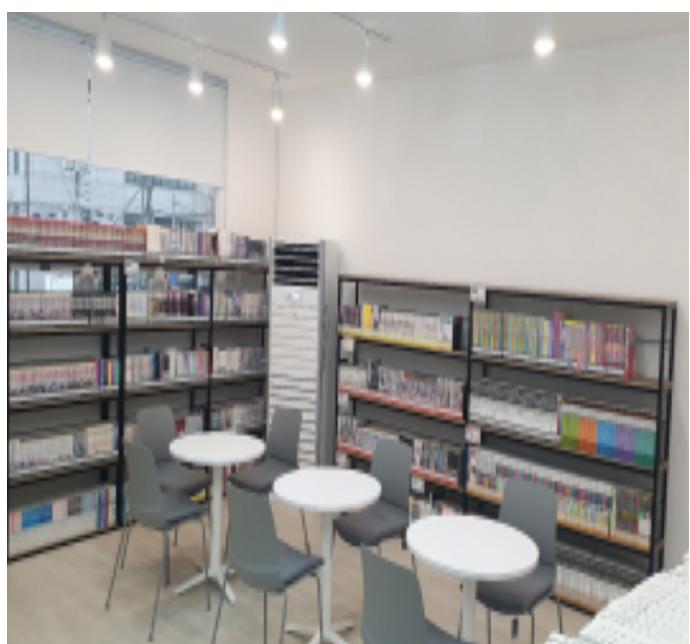
3층

다목적실



별관

포수마을만화도서관



응암1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응암1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주민자치회란?

주민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고 우리 동네의 문제와 어려움을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민대표 기구입니다.



응암1동 주민자치회 구성현황

구성일: 2021. 1. 1.

총인원: 53명(회장, 부회장, 감사 포함)

임 기: 2년(2회 연임 가능). 단, 회장, 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대 상: 해당 동 관할구역 내 거주(주민등록)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으로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위: 명, 2023.12.31. 기준)

전체			모집 부문		40대 이하			50대 이상			비고
합계	남	여	개인	단체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53	28	25	32	21	10	6	4	43	22	21	40대 이하 19% 50대 이상 81%



응암1동 주민자치회 임원진 현황

(2023.12.31.기준)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간사	분과장
이광희	윤석화	노영상 송수남	이경희	이미경	변명옥 김종필 한명신 박시형



회의 체계

주민자치위원, 행정이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회의 체계 구축

구 분	참여자	주요 내용(안건)	비 고
정기회의	주민자치회 위원	운영 세칙, 사업 등 주요 의결, 공유사항	월 1회
운영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간사, 분과위원장 (담당주무관)	분과별 활동 현황 공유 및 논의, 자치계획 수립 논의, 정기회의 상정 안건 정리와 준비	월 1회
민관협력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간사, 동장, 팀장, 담당 주무관	주요 행정사항, 사업 공유, 주민총회 협의 등	필요 시
분과회의	분과위원장, 분과총무, 분과위원, 분과원	의제 발굴 및 분과별 사업계획, 실행, 공유, 평가	월 1회
사무국 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담당 주무관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사항 공유, 지출결의 등 회계 업무	수시
실무회의	사무국장, 간사, 담당 주무관	실무 협력 논의 및 결정	수시

※ 임시회의 :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



분과위원회 주요 활동

분 과 명	주요 활동 범위
자기기획	자치회관 및 공동체 공간에 대한 조사, 기획 및 운영, 시 · 구 참여예산사업 등
환경안전	생태 및 주거환경 조사, 환경개선 활동, 안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시 · 구 참여예산사업 등
건강복지	건강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복지 사각지대 조사, 지원 프로그램 기획 · 운영, 시 · 구 참여예산사업 등
교육문화	전세대 교육 · 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동 축제 발굴, 기획 및 진행, 시 · 구 참여예산사업 등



2023년 주민자치회 일정

시기	운영내용	세부 운영 내용
2023. 1.	위촉장 전달 임원진 구성 2022년 하반기 감사실시 * 동 운영세칙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2기 임원진 구성 회장 1, 부회장 1, 감사 2명 [※추후 운영세칙에 의해 간사 결정] * 간사 호선 또는 각 동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 - 주민자치회 2022년 하반기 감사실시 * 구정창 보고 [조례 15조(감사)]
2023. 2.	분과구성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구성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임 및 신규 위원분과 재편성 논의 등 ② 분과구성 후 분과장, 분과 총무 선정 ③ 분과사업 공유 및 세부 진행 계획 등 논의
2023. 3~4.	운영세칙 준비위원회 구성 2024년 마을 의제 발굴 *23년 분과 사업 실행 *24년 마을 의제 발굴 *연합워크숍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세칙 준비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존 동 운영세칙 재교육 ② 신구 대조표 만들어서 논의 후 정정 ③ 변경 사항 논의 후 행정검토 및 정기회의 안건 상정 - 마을 의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별 마을 의제 발굴 논의 및 주민 홍보 등 ① 마을 돌아보기 ② 마을 의제 발굴 설문지 등 접수 ③ 실행 가능한 마을 의제 발굴 및 세부 계획서 작성 ④ 6월 부서 검토 접수 예정 - 분과사업 실행
2023. 5.	2024년 마을 의제 발굴 및 주민자치회 워크숍 1차 공론장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마을 의제 발굴 및 1차 공론장 실시 - 마을 의제 발굴 활동 청와대 워크숍 탐방 - 부서 검토 서류 작성 (참여 구정 팀) - 분과 사업 실행
2023. 6~7.	주민총회 준비 6월 : 마을 의제 부서 검토 7월 : 2차 공론장 및 주민총회 상정 사업 결정, 사전 투표 2023년 상반기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마을 의제 부서 검토 및 주민총회 홍보 - 2차 공론장 실시 및 7월 정기회의 주민총회 마을 의제 상정 사업 결정 - 홍보 및 주민총회 준비 [사전투표 실시] - 2023년 상반기 감사실시 - 분과사업 실행

단계	일정	주요 내용
2023. 8.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주민총회 준비, 사전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 주민총회 준비 및 사전투표
2023. 9.	2023년 주민총회 실시 2024년 마을 의제 선정 동 문화 축제 행사 (격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총회 실시 - 응암1동 포수 마을 축제 실시 - 분과사업 실행
2023. 10.	어울림 축제 한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울림 축제 한마당 참여 - 분과사업 실행
2023. 11.	분과 사업 마무리 진행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사랑의 김치 나눔(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사업 진행 - 자매결연지 방문 활동 등 - 주민자치회 사랑의 김치 나눔(김장) - 분과사업 실행
2023. 12.	연극“간병인” 공연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참여예산 사업“간병인” 공연 - 2023년 주민자치회 성과보고회 - 각 분과사업 마무리 - 서류 정리 및 예산지출결의 마무리 및 2024년 준비



2023 상반기 감사 보고



감사 개요

• 근 거

-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 서울시 은평구 응암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4조제6항
- **감사일시** : 2023. 7. 3.(월) 11:00 ~ 12:30
- **감사장소** : 주민자치회 사무실(동주민센터 2층)
- **감사자** : 노영상, 송수남
- **참석자** : 사무국장 이경희, 간사 이미경



진행 사진



응암1동 주민자치회 감사

감사종류	응암1동 주민자치회 사업 및 회계 감사
감사대상	응암1동 주민자치회
감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회 사업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회 구성과 분과원 조직 2) 각종 회의운영(실무회의, 분과회의, 운영위, 정기회의, 민관협력회의 등) 3) 민주적 회의운영 2. 주민자치회 각종 서류 및 회의록 3. 주민자치회 각종 회계
조치사항	특이 사항 없음
종합의견	일반운영비 지출결의서와 임수종 종빙서로 적정 하며 전체적으로 문제 없이 작성되어 있으며, 아직 원로서명 없어 하반기 감사시 확인예정임.

붙임. 1. 응암1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세부내용 1부. 끝

위와 같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7월 3일

제출자 감사 (노영상)



응암1동 주민자치회 감사

감사종류	응암1동 주민자치회 사업 및 회계 감사
감사대상	응암1동 주민자치회
감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회 사업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회 구성과 분과원 조직 2) 각종 회의운영(실무회의, 분과회의, 운영위, 정기회의, 민관협력회의 등) 3) 민주적 회의운영 2. 주민자치회 각종 서류 및 회의록 3. 주민자치회 각종 회계
조치사항	X
종합의견	전반적으로 회의(총회), 각종 서류와 물품이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으며 주민자치회 회계업무 및 사업처리가 관련 규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진행 처리 되었음을 확인함

불임. 1. 응암1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세부내용 1부. 끝

위와 같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7월 3일

제출자 감사 (송수남)

(서명)

응암1동 주민자치회 주요 활동 돌아보기



정월대보름 전통 놀이 한마당



분과 구성 워크숍





응암1동 새봄맞이 마을청소



제주도 한경면 자매결연지 협약식



불광천 벚꽃축제



역량강화 워크숍(청와대)





주민자치회 포수마을 산악회 발대식



제3회 응암1동 주민총회 개최





제11회 포수마을축제



은평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제2회 주민자치회 어울림 한마당 축제



응암1동 주민자치회 1동 1대학 연계「은평대학」MOU체결





마을의제 발굴을 위한 플로깅



자매결연지 방문 및 워크숍





사랑의 김장 나눔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2023년 응암1동 주민자치회 회계현황 자료

1 주민자치회 전체 사업별 회계예산

주민자치회 집행예산

사업구분	항 목	세부내역	금액(원)	집행금액(원)	잔액(원)
계			20,000,000	19,999,930	70
주민자치회 운영비 (5,000,000)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510,440	510,440	0
		사무관리비	3,235,560	3,235,550	10
	행사실비지원금	식·다과비 (주민자치회 분과운영 등)	1,254,000	1,254,000	0
	의제개발비 (15,000,000)	행사운영비(의제발굴)	835,560	835,500	30
		행사운영비(주민총회)	5,758,000	5,758,000	0
		행사운영비(성과공유회)	4,233,470	4,233,470	30
		식·다과비 (의제발굴, 성과공유회 등)	4,172,970	4,172,970	0

동 문화축제 집행예산

사업구분	항 목	세부내역	금액(원)	집행금액(원)	잔액(원)
계			18,000,000	18,000,000	0
(동)문화축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무대설치 등)	16,992,000	16,992,000	0
	행사실비지원금	식·다과비 (축제 추진 회의 등)	1,008,000	1,008,000	0

동 참여예산사업 집행예산

사업구분	항 목	금액(원)	집행금액(원)	잔액(원)
계	총 사업비	100,000,000	90,786,920	9,213,080
응암1동 지역사업	1. 응암1동 마을마당공원 주변 안전한 골목길 조성	30,000,000	20,912,000	9,088,000
	2.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17,500,000	17,500,000	0
	3. 2023년 헌혈 캠페인	10,000,000	10,000,000	0

사업구분	항 목	금액(원)	집행금액(원)	잔액(원)
응암1동 지역사업	4. 지역주민 및 청소년과 함께하는 전통 장 담그기	14,000,000	14,000,000	0
	5. 나를 도닥이는 요리 도전기	11,000,000	10,999,920	80
	6. 연극으로 소통하고 마음 공유하기	17,500,000	17,375,000	125,000

2 주민자치회 전체 사업별 세부내역

① 주민자치회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비록	실제 집행내역			집행액	반납액 (잔액)
합계	20,000,000		세부내역	산출내역			
주민 자치회 운영· 사업비	민간경상 보조금 5,000,000	일반 운영비	공공 운영비	주민자치회 사무실 통신요금, 신원보증보험 가입비	510,440		10
			사무 관리비	명함, 인장, 복합기 임차료, 사무용품 구매비 등	3,235,550		
		행사실비 지원금	식다과비	분과회의, 운영회의 식비 등	1,254,000		
		이자액		이자	2,519	2,519	
주민 자치회 의제 개발비	민간경상 보조금 15,000,000	일반 운영비	행사 운영비	[의제발굴] 주민공론장 무대 장식, 퍼실리레이터 강사비 등	835,500		60
				[주민총회] 행사물품 구매비, 영상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 등	5,758,000		
				[성과공유회] 행사물품 구매비, 영상 제작비, 홍보물 및 자료집 제작비 등	4,233,470		
				행사실비 지원금	주민공론장 다과비, 주민총회, 성과공유회 식비 등	4,172,970	
		행사실비 지원금		이자	10,983	10,983	

② (동)문화축제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비록	실제 집행내역			집행액	반납액 (잔액)
합계	18,000,000		세부내역	산출내역			
동문화 축제비	민간경상 보조금 18,000,000	일반 운영비	행사운영비	축제 운영 물품 및 먹거리 구매비, 보험료, 축하 공연 사례비	5,007,500		0
				무대 및 부스 설치	11,984,500		
		행사실비 지원금	식다과비	축제 추진 관련 회의 식비 등	1,008,000		

2023년 동 참여예산사업 추진 결과 보고

나를 도닥이는 요리 도전기

사업기간 2023. 3. ~ 12.

사업위치 응암제1동 주민센터 공유주방

소요예산 11,000천원

사업내용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요리 재능기부로 기본 밑반찬 및 김치류 등을 만들어
당일 완성된 요리는 저소득 가정 등에 나눔

추진결과 (실적)

회차(일자)	장소	요리명	자원봉사자	나눔실적
제1차 요리도전기 (2023. 4. 4.)	응암제1동 주민센터 공유주방	무생채, 진미채, 부지깽이나물, 계란말이	9명	자립준비청년 30가구
제2차 요리도전기 (2023. 4. 19.)	응암제1동 주민센터 공유주방	깍두기, 무생채, 진미채볶음, 멸치고추장볶음	10명	자립준비청년 30가구
제3차 요리도전기 (2023. 5. 10.)	응암제1동 주민센터 공유주방	소불고기	6명	자립준비청년 30가구
제4차 요리도전기 (2023. 5. 24.)	응암제1동 주민센터 공유주방	제육볶음, 진미채볶음	9명	자립준비청년 30가구
제5차 요리도전기 (2023. 6. 7.)	응암제1동 주민센터 공유주방	오리주물럭, 깻잎김치	8명	자립준비청년 30가구
제6차 요리도전기 (2023. 6. 21.)	응암제1동 주민센터 공유주방	장조림, 오이김치, 두부조림	18명	자립준비청년 30가구
제7차 요리도전기 (2023. 7. 5.)	응암제1동 주민센터 공유주방	등갈비, 마늘장아찌	8명	자립준비청년 30가구
제8차 요리도전기 (2023. 7. 19.)	응암제1동 주민센터 공유주방	배추겉절이, 잔멸치볶음	7명	자립준비청년 30가구
제9차 요리도전기 (2023. 9. 6.)	응암제1동 주민센터 공유주방	제육볶음, 황태구이, 무생채	10명	자립준비청년 30가구
제10차 요리도전기 (2023. 9. 20.)	응암제1동 주민센터 공유주방	소불고기, 진미채볶음	7명	자립준비청년 30가구
제11차 요리도전기 (2023. 10. 11.)	응암제1동 주민센터 공유주방	소불고기, 제육볶음	9명	자립준비청년 30가구
제12차 요리도전기 (2023. 10. 25.)	응암제1동 주민센터 공유주방	무생채, 메추리알 마늘 장조림	10명	자립준비청년 30가구
사랑의김장 나눔 (2023. 11. 20. ~ 21.)	응암제1동 주민센터 공유주방 및 야외주차장	김장 김치	56명	자립준비청년 85가구

자체평가

자치회관 공유주방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과 자립준비청년들이 서로의 요리비법을 공유하고 함께 배우며
음식을 만들으로써 이웃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만들어진 음식을 아동 복지시설을 퇴소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였음.



사업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원)

통계목	예산액	집행		집행잔액
		금액	집행률(%)	
행사운영비	9,800,000	9,799,920	99.9%	80
행사실비지원금	1,200,000	1,200,000	100%	-
총계	11,000,000	10,999,920	99.9%	80

2023년 동 참여예산사업 추진 결과 보고

지역 주민 및 청소년과 함께하는 전통 장 담그기

사업기간 2023. 3. ~ 12.

사업위치 응암제1동 주민센터 공유주방 및 옥상

소요예산 14,000천원

사업내용

전통 장 담그기 체험 행사를 통해 전통문화를 알리고
숙성된 장은 관내 시설 및 저소득 가정 등에 나눔

추진결과 (실적)

회차(일자)	장소	요리명	자원봉사자	나눔실적
장담그기 사전 물품정비 (2023. 4. 3.)	응암제1동 주민센터 옥상	장독 씻기 등 필요물품 정비	13명	
장담그기 사전 준비작업 (2023. 4. 12.)	응암제1동 주민센터 공유주방	엿기름 끓이기 등 장담그기 사전 준비	6명	
제1차 전통 장 (보리막장) 담그기 (2023. 4. 14.)	응암제1동 주민센터 공유주방 및 옥상	전통 장(보리막장) 담그기	12명	저소득계층 등 200가구
장담그기 사전 물품정비 (2023. 10. 10.)	응암제1동 주민센터 공유주방	전통 장 담그기 필요물품 정비	10명	
제2차 전통 장 (고추장) 담그기 (2023. 10. 17.)	응암제1동 주민센터 공유주방 및 옥상	전통 장(고추장) 담그기	25명	
사랑의 고추장 전달 (2023. 10. 18. ~ 19.)	응암제1동 주민센터 및 저소득가정	사랑의 전통 장 나눔(전달)	36명	저소득계층 등 160가구

자체평가

강원도 청정지역의 유기농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전통 장류 제조사의 지도하에 주민들이 직접 전통 장을 만들고 맛보면서
을바른 먹거리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주민들이 직접 만든 전통 장을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나눔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음.



사업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원)

통계목	예산액	집행		집행잔액
		금액	집행률(%)	
행사운영비	12,640,000	12,640,000	100%	-
행사실비지원금	1,360,000	1,360,000	100%	-
총계	14,000,000	14,000,000	100%	-

2023년 동 참여예산사업 추진 결과 보고

2023. 헌혈 캠페인

사업기간 2023. 3. ~ 12.

사업위치 은경빌딩 등 관내 주요 거점

소요예산 10,000천원

사업내용

헌혈 및 캠페인 전개, 은평구 권역별 확대 추진

※ 제1차·제6차 : 응암제1동, 제2차~제5차 : 은평구 권역별 헌혈 캠페인 전개

추진결과 (실적)

회차(일자)	장소	요리명	자원봉사자	혈액검사자	헌혈자
제1차 캠페인 (2023. 4. 13.)	은경빌딩 앞	응암제1동	26명	54명	27명
제2차 캠페인 (2023. 5. 9.)	올리브영 연신내점 앞	불광제2동, 갈현제1동, 갈현제2동, 대조동, 진관동	41명	54명	46명
제3차 캠페인 (2023. 6. 13.)	이마트은평점 앞	불광제1동, 구산동, 역촌동, 신사제1동	66명	63명	31명
제4차 캠페인 (2023. 9. 12.)	수색성당 앞	응암제3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33명	53명	20명
제5차 캠페인 (2023. 10. 10.)	은평구청 앞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53명	67명	39명
제6차 캠페인 (2023. 11. 14.)	은경빌딩 앞	응암제1동	35명	42명	32명

자체평가

혈액 수급 위기 극복 및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헌혈 캠페인 전개를 통해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께 생명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하였으며,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은평구 전 동이 함께
2023. 헌혈 캠페인에 참가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 컸다고 생각함. 내년부터 헌혈 캠페인을 은평구에서 직접 수행하게
되는데 많은 은평구민분들이 함께 캠페인에 참가하여 혈액 수급 위기가 해소되고 헌혈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함.



사업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원)

통계목	예산액	집행		집행잔액
		금액	집행률(%)	
행사운영비	7,840,000	7,840,000	100%	-
행사실비지원금	2,160,000	2,160,000	100%	-
총계	10,000,000	10,000,000	100%	-

2023년 동 참여예산사업 추진 결과 보고

연극으로 소통하고 마음 공유하기

사업기간 2023. 7. ~ 12.

사업위치

- 공연장소 : 북촌 창우극장[2023. 12. 8.(금) 19:30, 12. 9.(토) 16:00]
- 연습장소 :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2층 문화의집 작은도서관

소요예산 17,500천원

사업내용 창작연극 “간병인” 공연

추진결과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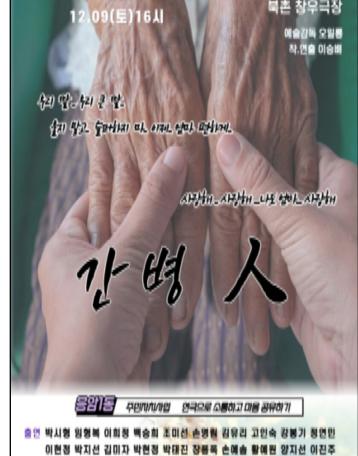
회차(일자)	장소	활동내역	연극연습 참여
2023. 7. 10.		창작연극 “간병인” 운영 수의계약 체결	
2023. 7. 17. ~ 8. 6.	홈페이지, sns 등	창작연극 “간병인” 배우 오디션 공고	
2023. 8. 20.	응암제1동 주민센터 2층 주민자치회 사무실	공개 오디션으로 배우 20명 선정	
오리엔테이션 및 제1차 연기연습 (2023. 9. 11.)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오리엔테이션 및 연기 연습	20명
제2차 연기연습 (2023. 9. 16.)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20명
제3차 연기연습 (2023. 9. 18.)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20명
제4차 연기연습 (2023. 9. 23.)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20명
제5차 연기연습 (2023. 9. 25.)	응암제1동 주민센터 2층 작은도서관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19명
제6차 연기연습 (2023. 10. 7.)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20명

회차(일자)	장소	활동내역	연극연습 참여
제7차 연기연습 (2023. 10. 9.)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11명
제8차 연기연습 (2023. 10. 14.)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11명
제9차 연기연습 (2023. 10. 15.)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13명
제10차 연기연습 (2023. 10. 16.)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13명
제11차 연기연습 (2023. 10. 21.)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11명
제12차 연기연습 (2023. 10. 22.)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19명
제13차 연기연습 (2023. 10. 23.)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12명
제14차 연기연습 (2023. 10. 28.)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16명
제15차 연기연습 (2023. 10. 29.)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20명
제16차 연기연습 (2023. 10. 30.)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20명
제17차 연기연습 (2023. 11. 4.)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19명
제18차 연기연습 (2023. 11. 5.)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17명
제19차 연기연습 (2023. 11. 6.)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16명
제20차 연기연습 (2023. 11. 11.)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13명
제21차 연기연습 (2023. 11. 12.)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15명

회차(일자)	장소	활동내역	연극연습 참여
제22차 연기연습 (2023. 11. 13.)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15명
제23차 연기연습 (2023. 11. 18.)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16명
제24차 연기연습 (2023. 11. 19.)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18명
제25차 연기연습 (2023. 11. 20.)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17명
제26차 연기연습 (2023. 11. 25.)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18명
제27차 연기연습 (2023. 11. 26.)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18명
제28차 연기연습 (2023. 11. 27.)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17명
제29차 연기연습 (2023. 12. 2.)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20명
제30차 연기연습 (2023. 12. 3.)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20명
제31차 연기연습 (2023. 12. 4.)	응암제1동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20명
제32차 연기연습 (2023. 12. 5.)	응암제1동 주민센터 2층 작은도서관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16명
제33차 연기연습 (2023. 12. 6.)	응암제1동 주민센터 2층 작은도서관	창작연극 “간병인” 연기 연습	18명
제34차 연기연습 (2023. 12. 7.)	북촌창우극장	창작연극 “간병인” 리허설	20명
제1차 연극 공연 (2023. 12. 8.)	북촌창우극장	창작연극 “간병인” 공연	20명
제2차 연극 공연 (2023. 12. 9.)	북촌창우극장	창작연극 “간병인” 공연	20명

자체평가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공개 오디션을 통해 연극 배우 20명을 선정하여 현대사회에 가족 간병의 현실과 아픔을 주제로 한 창작 연극 간병인을 상연함으로써 관객들에게 간병으로 인한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을 고민하게끔 하는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주민들이 직접 연극 배우가 되어 무대에 서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고취하고 세대 간 소통으로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정말 뜻깊고 가슴 따뜻한 사업이었음.



사업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원)

통계목	예산액	집행		집행잔액
		금액	집행률(%)	
행사운영비	15,340,000	15,215,000	99.2%	125,000
행사실비지원금	2,160,000	2,160,000	100%	-
총계	17,500,000	17,375,000	99.3%	125,000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감사담당관 계약심사 결과에 따른 연극 "간병인" 용역 계약 금액 감액

2023년 제3회 주민총회

결과 보고

주민이 직접 발굴 · 제안한 마을 의제 중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 시행 여부를 정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I 총회 개요

- 행 사 명 제3회 응암1동 주민총회
- 일 시 2023. 9. 2.(토) 13:00
- 장 소 복합문화시설 부지(구 등기소 부지)
- 주요내용
 - 2023년 주민자치회 동(洞) 지역사업 결과 보고
 - 2024년 은평구 참여예산 동(洞) 지역사업설명, 현장 투표, 의제 선정 결과발표
- 투표결과 투표 자격 : 18세 이상(2005. 9. 2 이전 출생)
 - 응암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응암1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응암1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정 족 수 : 주민총회 개최일 한 달 전(2023. 8. 2.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 32,848명 중 329명(1%) 이상
- 투 표 수 : 총 1,715 명(투표율5.2%)
- 개표 결과 : 10개 사업 전체가 과반수 이상 찬성하여 승인됨

분야 [1억]	순위	2024년 응암1동 (동)지역사업 선정	사전투표 유효 : 1,715표 현장투표 유효 : 17표		무효 (사전, 현장)	결과
			찬성	반대		
프로그램 사업 2천만원	1위	사랑 나눔 요리 [10,000]	1670	62	23	승인
	2위	전통장 담그기 [500]	1613	119		승인
	3위	이웃나눔 마늘쫑아찌 [500]	1607	125		승인
환경 사업 2천만원	1위	어두운 골목길, 태양광 로고젝터 설치 [10,000]	1709	23	23	승인
	2위	깨끗한 응암1동! 클린업 데이! [10,000]	1705	26		승인
동 특성화사업 3천만원	1위	마을 안전 지킴이 [15,000]	1696	36	23	승인
	2위	우리함께 즐겨요. 게이트볼 [7,000]	1623	109		승인
	3위	마음을 톡톡 두드리는 캐리커쳐 [8,000]	1601	130		승인
시설 사업 3천만원	1위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20,000]	1689	43	23	승인
	2위	백련산 등산로 건강정보판 설치 [10,000]	1658	74		승인



II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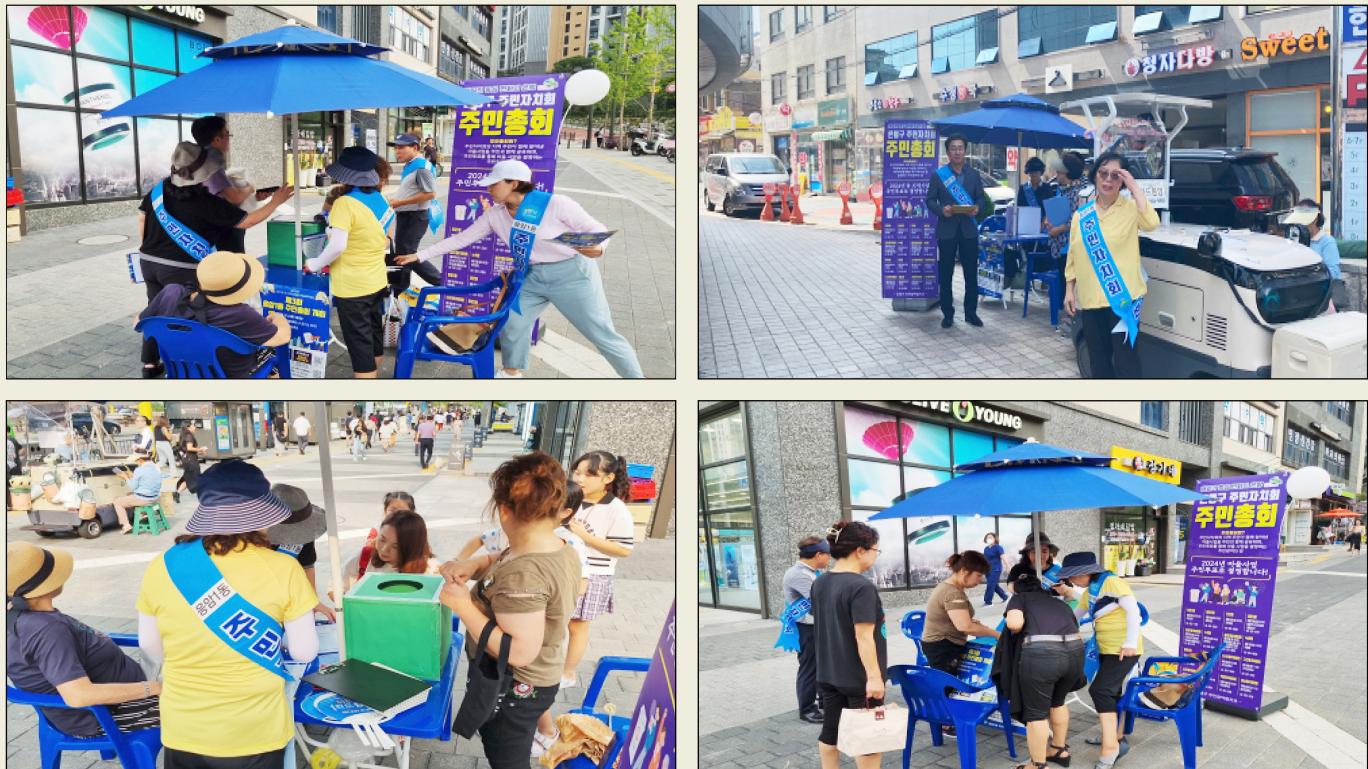
주민총회 추진 및 진행내용

내용	일정	세부 내용
주민총회 준비	2023.0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권자 확인, 주민총회 공고 · 계획 수립 - 사전투표 및 투표 방법, 홍보 방법 결정
주민총회 공고	2023.0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총회 공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2023.08.02. ~ 0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수막 ▷ 리플릿(투표용지 포함) ▷ 포스터 ▷ 마을의제 배너 10개
사전투표 진행	2023.08.17. ~ 08.22. (4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투표 및 방문 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투표 : 네이버품 / 참여의큰숲 - 상설투표소 : 주민센터 1층 민원실 - 거점투표소 : 은경빌딩 앞, 올리브영 앞 오전팀 19시~13시 / 오후팀 16시~19시
주민총회 개최	2023.09.02.(토) 13: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맞이 오프닝 공연 ▷ 국민의례, 개회 선언 ▷ 내빈 소개 및 인사 말씀, 표창 수여 ▷ 제3회 주민총회 준비 과정 영상 및 2023년 동 지역사업 결과 보고 영상 ▷ 응암1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사(분과별) ▷ 2024년 동 지역사업 설명, 현장 투표, 의제 선정 결과발표 ▷ 기념 촬영 및 폐회선언



III 행사 사진

사전투표 및 홍보활동



주민총회



개표 결과				
분야 (1억)	순위	2024년 응암1동(동)자치사업 선정	결과	무효
프로그램사업 2천만원	1위	· 사랑 나눔 요리 [10,000]	승인	
	2위	· 전통장 담그기 [500]	승인	
	3위	· 이웃나눔 마늘쫑아찌 [500]	승인	
환경사업 2천만원	1위	· 어두운 골목길, 대양광 로고젝터 설치 [10,000]	승인	
	2위	· 깨끗한 응암1동! 클린업 데이 [10,000]	승인	
동특성사업 3천만원	1위	· 마을 안전 지킴이 [15,000]	승인	
	2위	· 우리텃밭 즐겨요. 케이트풀 [7,000]	승인	
	3위	· 마음을 톡톡 두드리는 캐리커처 [8,000]	승인	
시설사업 3천만원	1위	·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20,000]	승인	
	2위	· 백련산 등산로 건강정보판 설치 [10,000]	승인	

2024년 응암1동, 동(洞) 지역사업

사랑나눔요리

소요예산 총액 : 10,000,000원

사업기간 2024. 4. ~ 2024. 12.

배경 및 필요성

주민센터 공유주방을 활용하여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요리를 저소득 가정에 나눔으로써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사업위치 응암1동 주민센터

수혜대상 응암1동 저소득 가정

사업내용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요리 재능 기부로 밑반찬, 김치류 등을 만들어 당일 완성된 요리를 저소득 가정에 나누는 사업

추진주체 응암1동 주민자치회

기대효과 지역에 소외된 주민들과 폭넓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직접 소통하고 주민들도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연속적인 사업으로 성장하여 응암1동을 대표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

2024년 응암1동, 동(洞) 지역사업

이웃나눔 마늘장아찌

소요예산 총액 : 5,000,000원

사업기간 2024. 5.~2024. 6.

배경 및 필요성

일반적인 마늘장아찌를 만들어 1인 중장년 가구, 청소년 가구 및 독거 어르신 등과 나눔을 실천하여, 소외된 계층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기회를 갖고자 함



사업위치 응암1동 주민센터

수혜대상 응암1동 1인 중장년 가구, 청소년 가구 및 독거 어르신

사업내용 자매 결연지(제주도 한경면)의 특산물을 구매하여
지역주민의 재능기부로 장아찌를 만들어 소외된
계층에 나눔

추진주체 응암1동 주민자치회

기대효과

- 요리 도전기를 통해 재능기부로 요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나누었을 때의 기쁨
-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고취 시킬 수 있음

2024년 응암1동, 동(洞) 지역사업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전통 장 담그기

소요예산 총액 : 5,000,000원

사업기간 2024. 10.

배경 및 필요성

전통 장 담그기 체험 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장 담그기 문화를 알리고자 함



사업위치 응암1동주민센터 공유주방

수혜대상 응암1동 주민

사업내용 전통 장 담그기 체험 행사를 통해 전통문화를 알리고
만든 장은 저소득 가정 등에 나눔

추진주체 응암1동 주민자치회

기대효과 전통 장 담그기 체험 행사를 통해 장 담그기 문화를 알리고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공감대 조성 및 이웃 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2024년 응암1동, 동(洞) 지역사업

백련산 등산로 건강정보판 설치

소요예산 총액 : 10,000,000원

사업기간 2024. 3. ~ 2024. 12

배경 및 필요성

응암1동 관내 백련산 등산로 들머리에 건강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백련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건강 및 백련산 등산로 정보 등을 제공



사업위치 백련산 등산로 들머리(응암1동)

- ① 생태다리 나무계단 입구
- ② 꿈나무 마을 백련산 입구

수혜대상 은평구민

사업내용 백련산 등산로 들머리에 건강정보판(건강 정보, 백련산 등산로 정보, 환경보호 안내 문구 등) 설치

추진주체 응암1동 주민자치회, 공원녹지과

기대효과 백련산 등산로 들머리에 정보판 설치로 등산객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와 백련산 등산로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백련산을 등산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함

2024년 응암1동, 동(洞) 지역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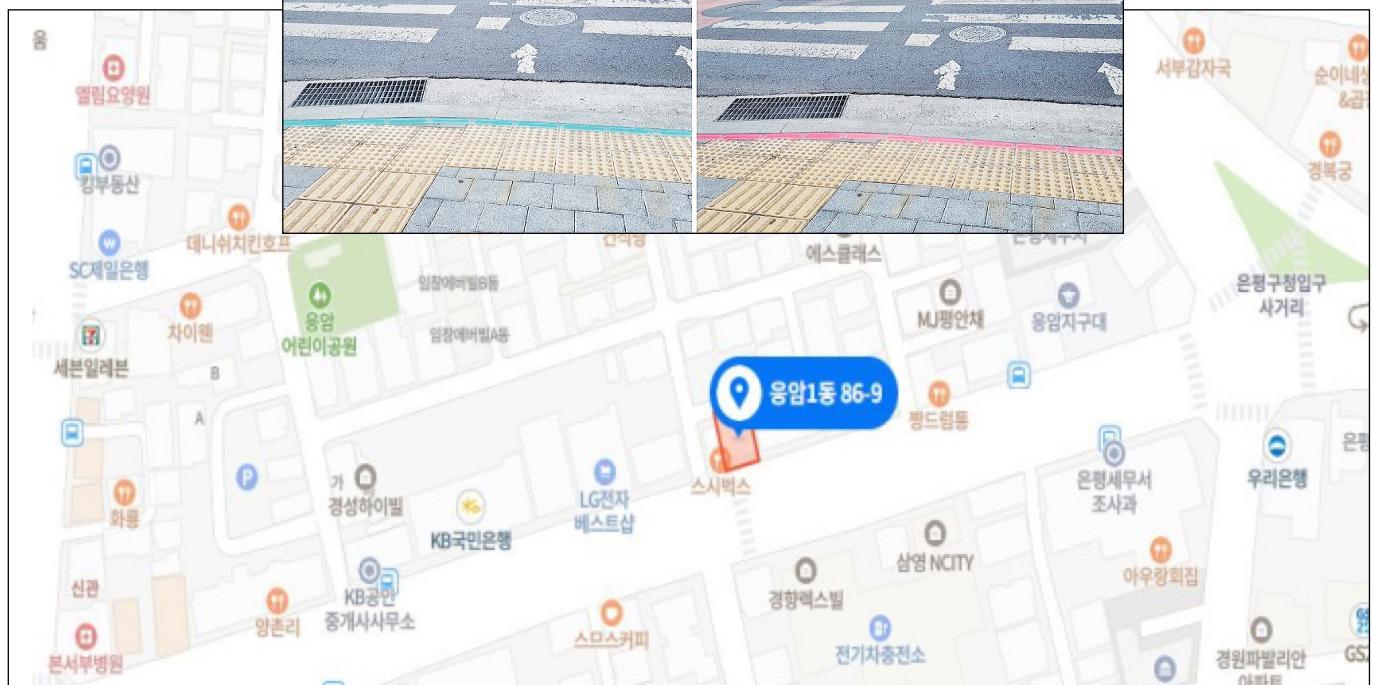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

소요예산 총액 : 20,000,000원

사업기간 2024. 4. ~ 2024. 12.

배경 및 필요성

횡단보도 대기 선 바닥에 신호기와 연동되는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사고 예방



사업위치 응암동 86-9 신호등

수혜대상 응암1동 주민

사업내용 응암동 86-9 신호등에 LED 바닥신호등 설치

추진주체 응암1동 주민자치회, 도로과

기대효과 LED 바닥 신호등 설치로 보행자에게 추가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사고 예방에 기여

2024년 응암1동, 동(洞) 지역사업

마음을 톡톡 두드리는 캐리커쳐

소요예산 총액 : 8,000,000원

사업기간 2024. 3. ~ 2024. 12

배경 및 필요성

해학적인 캐리커쳐 배우기를 통해 자아 성취를 하고 흘로 계시는
증 · 장년층과 취약계층 및 1인 가족과 소통



사업위치 응암1동 주민센터 또는 포수마을 만화도서관

수혜대상 응암1동 주민

사업내용 캐리커쳐 배우기를 통한 주민 간 소통

추진주체 응암1동 주민자치회

기대효과 재난, 응급 상황에 대한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재난, 응급 상황 시 지역
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

2024년 응암1동, 동(洞) 지역사업

우리함께 즐겨요 게이트볼

소요예산 총액 : 7,000,000원

사업기간 2024. 4. ~ 2024. 12

배경 및 필요성

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스포츠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살기좋은 응암1동 만들기



사업위치 꿈나무마을

수혜대상 응암1동 주민

사업내용 운동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소통 및 화합 도모

추진주체 응암1동 주민자치회

기대효과 재난, 응급 상황에 대한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재난, 응급 상황 시 지역
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

2024년 응암1동, 동(洞) 지역사업

깨끗한 응암1동! 클린업 데이!

소요예산 총액 : 10,000,000원

사업기간 2024. 3. ~ 2024. 12

배경 및 필요성

응암1동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스스로 플로깅 자조 모임을 구성하여 캠페인 전개



사업위치 응암1동 일대

수혜대상 응암1동 주민

사업내용

- 플로깅 자조 모임 구성 후 정기적인 쓰레기 줍기 활동 전개
-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등 관련 환경교육(친환경 교육 키트 활용 등) 및 관련 시설(서울에너지드림센터 등) 견학 추진

추진주체 응암1동 주민자치회

기대효과 플로깅 활동을 통해 지역 쓰레기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환경보호 교육 및 시설 견학을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제고

2024년 응암1동, 동(洞) 지역사업

어두운 골목길 태양광 로고젝터 설치

소요예산 총액 : 10,000,000원

사업기간 2024. 3. ~ 2024. 12

배경 및 필요성

응암1동 어두운 골목길(범죄 취약지역 등)에 태양광 로고젝터를 설치함으로써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전기 생산으로 탄소 절감 효과를 이를 뿐 아니라 어두운 골목길을 밝혀 범죄 가능성 감소시킴으로써 보행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보장



- 사업위치**
- ① 불광천길 548(절도 등 범죄 관련 유동 인구 많음)
 - ② 은평로6길 7-1 앞(신진과학고 옆/학폭 예방)
 - ③ 은평로12길 17 앞(응암1동 마을마당 인근 어두운 골목길)
 - ④ 은평로 182-8(흡연 소란 등 민원 제기 지역)
 - ⑤ 은평로 121(이마트 옆 골목, 유동 인구 많음, 무단횡단)

수혜대상 응암1동 주민

사업내용 응암1동 내 어두운 골목길에 태양광 로고젝터 설치

추진주체 응암1동 주민자치회, 도시계획과

기대효과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탄소 절감 효과 및 골목길 범죄예방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

부록 | 응암1동 주민총회 공고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1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2023-6호

2023. 응암1동 제3회 주민총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2조에 따라 2023. 응암1동 제3회 주민총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주민총회 개최

- 일 시 : 2023. 9. 2.(토) 13:00
- 장 소 : 복합문화시설부지(구 등기소부지, 은평구 응암동 95-1)

2. 보고 및 안건사항

- 보고사항 : 2023년도 응암1동 주민자치회 운영 보고
- 안건사항 : 응암1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의결
- 2024년도 은평구 참여예산 동(洞) 지역사업

3. 주민총회 투표 자격

- 18세 이상(2005. 9. 2. 이전 출생)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응암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응암1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응암1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투표기간 및 방법

- 사전 거점투표
- 기 간 : 2023. 8. 17.(목) ~ 8. 22.(화) ※ 주말 제외
- 장 소 : 응암1동 주민센터 09:00 ~ 18:00
은경빌딩 앞, 올리브영 뉴번역점 앞 10:00 ~ 13:00, 16:00 ~ 19:00
- 사전 온라인 투표
- 기 간 : 2023. 8. 17.(목) ~ 8. 25.(금)
- 방 법 : QR코드 스캔(추후 현수막 등 참조)
- 주민총회 당일 현장 투표 : 2023. 9. 2.(토) 13:00
※ 위 방법 중 1가지 방법으로 1회만 참여 가능

5. 주민총회 의결정족수

-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달 전(2023. 8. 2.) 주민등록상 인구 32,848명 중에서 1%인 329명 이상의 투표 참여로 성원됩니다.

6. 결과보고 : 은평구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자료집 배포

7. 문의사항 : 응암1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02-351-3824~5)

※ 위 내용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응암1동 주민자치회장



부록 | 응암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 정	2021. 3. 18. 2021년 임시회의
일부 개정	2021. 8. 26. 2021년 4차 정기회
전면 개정	2022. 3. 24. 2022년 2차 정기회의
일부 개정	2023. 4. 27. 2023년 4월 정기회의 의결 2023. 6. 22. 2023년 6월 정기회의 공유

2023. 6

응암1동 주민자치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정) 2021.03.18.

(일부개정) 2021.08.26.

(전면개정) 2022.03.24.

(일부개정) 2023.04.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40조 규정에 따라 응암1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응암1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응암1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응암1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응암1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조례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 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 · 복지 · 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운영진”이란 주민자치회 회의체계에서 호선 또는 선임된 위원을 말한다.
7. “고문”이란 응암1동에서 선출된 구의원과 응암1동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구의원을 말한다. 다만, 고문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8. “자문위원”이란 응암1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운영회의에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운영 원칙) ① 4조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 원칙은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4.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 화합과 갈등 해소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종교적·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 ②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2.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위탁·수탁 처리
4. 자치 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 참여예산의 사업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제2장 주민자치회 조직 및 편성

제8조(주민자치회 위상)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결정권을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조직이다.

제9조(위원)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과 선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공고와 인적 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조례에 따라 예비 후보자의 순위대로 위촉하되 예비 후보자의 순위가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공개모집과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위촉하거나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례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위촉 해제를 결의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연 4회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단, 질환, 관혼상제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예외)
 3. 주민자치회 위원이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4.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퇴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6. 자치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 범죄행위를 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7. 자치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8.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치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② 제1항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촉을 결의할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해촉 절차와 방법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운영진 선출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진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2조(운영진 선출) ① 자치회장, 자치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회의에서 자치위원 중에 선출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1명 출마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 또는 호선하고, 간사의 추천으로 자원봉사자를 임명하여 간사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와 자원봉사자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분과장은 해당분과 자치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자치회장 선출 방법을 준용한다.

제13조(운영진 구성 및 임기)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진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자치회장, 자치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단,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합하여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간사 1명
5. 분과별 분과장 각 1명

② 위 제1항이 규정하는 운영진 이외에 운영진이 필요한 때에는 회장이 발의하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둘 수 있다.

제14조(운영진 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자치 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 ③ 운영진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참여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 등에 참여한다.
- ④ 분과장은 분과위원회를 관리하며 주민자치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⑤ 간사는 주민자치회 활동 전반을 지원하며, 활동 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진 해임)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진은 제27조에 따라 정기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회의 또는 분과회의에 연 3회 무단 불참할 경우(단, 질환, 관혼상제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예외)
2. 운영진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자치회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 경우

제16조(사임) 운영진, 자치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 제출한 익일부터 사임한 것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업무 인수인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궐위와 후임 선출) 자치회장, 운영진 궐위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한다.

1. 자치회장 궐위 시 조례에 따라 자치 부회장이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2. 자치 부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이면 공석으로 둔다.
3. 감사와 분과장 궐위 시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선출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 운영

제18조(사무국)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자치회관 위수탁 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간사,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은 주민 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
- ④ 사무국은 실무 진행 시 해당 내용을 주민자치회 운영진 또는 위원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역량 강화 지원
2. 기록물 생산 및 보존
3. 예산, 회계 및 지출 실무
4.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
5. 자치 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6. 주민자치회 사업 기획 및 실행 지원
7. 분과활동 활성화 및 운영 지원
8. 자치회관 위수탁 사무
9. 그 외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등

제19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의 보조를 받아 주민자치회 운영 실무를 총괄한다.

-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채용한다.

1.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 및 사업 기획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
 3. 주민과 소통하며 응암1동 주민자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 ③ 사무국장에게는 활동 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를 구성한다.

- ②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분과를 구성하며 자치회관 운영분과는 필수 분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회와 분과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주민자치회 위원 7명 이상을 필수 구성으로 한다.
-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장 및 분과 총무를 선출한다.
- ⑤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공동사업 및 해당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역할을 수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회의·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주민총회
 2. 정기회의
 3. 운영회의
 4. 민관협력회의
 5. 분과회의
- ② 자치회장은 회의 종료 후 별도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람하여야 한다.
 - ③ 사무국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 ④ 간사는 제1항의 2호부터 4호까지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자치회장과 자치 부회장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각 분과는 5호의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분과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 ② 주민총회는 개최 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전체 주민의 1% 이상 참석으로 한다(사전투표 포함). 주민총회의 정족수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단, 응암1동 소재의 사업자, 단체 소속 등 생활 주민도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킨다.
- 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 계획을 확정한다.

- ④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 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 ⑥ 주민총회는 자치 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 계획을 결정한다.

제23조(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전체 회의 정기 회의는 매월 4번째 목요일에 개최하며, 조례에 따라 소집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운영세칙 및 세칙 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3. 주민자치회 사업 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위원의 해촉 요구 및 운영진의 선출 및 해임
5.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안건의 의결 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7. 운영회의 및 분과 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8. 수입 · 지출 내역을 포함한 자치회관의 운영 결과 보고의 승인
9.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 ·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④ 주민자치회의 정기 회의는 주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 단, 발언권은 갖지 않는다.

⑤ 임시 회의는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개최하며 위 제2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4조(운영회의) ① 운영회의는 매월 정기 회의 개최 전 개최한다.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운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회의는 자치회장, 자치 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단, 분과장 유고 시 분과 총무가 출석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필요에 따라 출석한다.

⑤ 운영회의는 제13조에 따른 운영진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2.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정기 회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 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제25조(민관협력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둔다.

② 민관협력 회의는 동장, 팀장, 동 담당자, 자치회장, 자치 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등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③ 회의는 동장 또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제26조(분과회의) ① 분과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월 1회 정례회의로 개최하고,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 할 수 있으며, 분과장이 소집한다. 단, 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가 필요할 경우에는 분과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분과 회의를 개최한다.

제27조(회의 의결) ① 위원은 회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은 가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운영세칙 변경(제정 · 개정 · 폐지)
2. 위원의 위촉 해촉 요구 및 운영진 해임

제28조(자치 계획 수립) ① 사무국장은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해당 분과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진 회의에 보고한다.

② 운영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회의에 보고한다.

③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2.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 참여 및 타 단체 협조 사항 등
- ④ 주민자치회 및 구청이 주관하는 정책공유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종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 ⑤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자치회관 운영) ① 자치회관 운영은 자치회관 운영 분과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민들이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③ 조례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3조의4까지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제4장 예산 및 문서관리

제30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 보고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수탁금, 찬조금, 회비, 기탁 물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료는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3. 수익금은 자치회관 운영 및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4. 수탁금은 근린 자치 실현을 위해 수탁 받은 사업 예산
5.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등이 후원한 예산
6. 회비는 자치위원들이 상 · 하반기 납부하는 수입으로, 회비는 월 **20,000원**으로 한다. 회비의 집행은 [부칙 제4조]에 따른다.

제32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사무국에서 관리하되,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 · 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② 회장은 주민총회 시 수립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출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하며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 100,000원 이내는 선 집행 후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결산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회의에 결산 보고 한다.

제35조(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 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을 새로 하거나 고치거나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사무국에서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직인 날인 사항을 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위·해촉·사임 대장
 2. 주민자치회 회의록
 3. 주민자치회 직인 대장
 4. 문서접수 접수 및 발급 대장
 5. 문서등록 대장
 6. 각종 회계장부
 7. 사업계획서
 8.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②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부 칙(2023. 4. 27.)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 회의를 거쳐 2022. 3. 24.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사항은 내규로 정하고 내규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주민자치회는 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운영세칙을 개정한다.

제4조(회비) ① 회비는 매월 20,000원으로 정하되, 부는 계좌로 6개월치 또는 12개월치 일시 납부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비를 집행할 수 있다.

1. 민관협력 행사 시 단체 회비 200,000원 (축제, 체육대회, 자매결연지 방문 등)
 2. 애경사 경비 200,000원 (자녀의 결혼 시, 본인 · 배우자 · 부모 · 자녀 사망 시)
 3. 현금성 경비 (택배, 퀵비, 택시비, 세탁비 등의 현금결제 등)
 4. 기타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
- ③ 10,000원 미만으로 경미한 지출 시 선결제한 후에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④ 회계연도가 끝나면 잔액에 대해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⑥ 회비 미납 위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신·구조문대비표

명칭	기존세칙	개정세칙(2023.6.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0조 규정에 따라 응암1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0조 규정에 따라 응암1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응암1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응암1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응암1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제3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응암1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응암1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응암1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운영진”이란 주민자치회 회의체계에서 호선 또는 선임된 위원을 말한다. 7. “고문”이란 응암1동에서 선출된 구의원과 응암1동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구의원을 말한다. 다만, 고문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8. “자문위원”이란 응암1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운영 회의에서 구성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응암1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응암1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6. “운영진”이란 주민자치회 회의체계에서 호선 또는 선임된 위원을 말한다. 7. “고문”이란 응암1동에서 선출된 구의원과 응암1동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구의원을 말한다. 다만, 고문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8. “자문위원”이란 응암1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운영 회의에서 구성할 수 있다.

명칭	기존세칙	개정세칙(2023.6.22.)
	<p>제6조(운영원칙) ① 제4조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원칙은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주민 화합과 갈등해소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종교적·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p>②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제6조(운영원칙) ① 제4조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원칙은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주민 화합과 갈등해소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종교적·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p>②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제7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 협의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위탁·수탁 처리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 결정과정 수행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 	<p>제7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 협의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위탁·수탁 처리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 결정과정 수행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제2장 총칙	<p>제8조(주민자치회 위상)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결정권을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조직이다.</p>	<p>제8조(주민자치회 위상)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결정권을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조직이다.</p>
	<p>제9조(위원)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과 선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공고와 인적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조례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순위대로 위촉하되 예비후보자의 순위가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촉하거나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p>	<p>제9조(위원)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과 선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공고와 인적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조례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순위대로 위촉하되 예비후보자의 순위가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촉하거나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p>

명칭	기존세칙	개정세칙(2023.6.22.)
제2장 총칙	<p>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위촉 해제를 결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연 4회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 (단, 질환, 관혼상제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예외) 3. 주민자치회 위원이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4.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퇴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6. 자치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 범죄행위를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7. 자치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8.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치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p>② 제1항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해촉을 결의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해촉절차와 방법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p>	<p>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위촉 해제를 결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연 4회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 (단, 질환, 관혼상제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예외) 3. 주민자치회 위원이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4.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퇴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6. 자치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 범죄행위를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7. 자치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8.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치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p>② 제1항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해촉을 결의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해촉절차와 방법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p>
	<p>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운영진 선출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선거관리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③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p> <p>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진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p>	<p>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운영진 선출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선거관리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③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p> <p>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진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p>
	<p>제12조(운영진 선출) ①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회의에서 자치위원 중에 선출 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1명 출마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p> <p>②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 또는 호선하고, 간사의 추천으로 자원봉사자를 임명하여 간사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와 자원봉사자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운영진 선출) ①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회의에서 자치위원 중에 선출 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1명 출마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p> <p>②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간사를 선임 또는 호선하고, 간사의 추천으로 자원봉사자를 임명하여 간사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와 자원봉사자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명칭	기존세칙	개정세칙(2023.6.22.)
제2장 총칙	③ 분과장은 해당분과 자치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자치회장 선출 방법을 준용한다.	③ 분과장은 해당분과 자치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자치회장 선출 방법을 준용한다.
	<p>제13조(운영진 구성 및 임기)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진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자치회장, 자치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단,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합하여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간사 1명 5. 분과별 분과장 각 1명 <p>② 위 제1항이 규정하는 운영진 이외에 운영진이 필요한 때에는 회장이 발의하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둘 수 있다.</p>	<p>제13조(운영진 구성 및 임기)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진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자치회장, 자치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단,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합하여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간사 1명 5. 분과별 분과장 각 1명 <p>② 위 제1항이 규정하는 운영진 이외에 운영진이 필요한 때에는 회장이 발의하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둘 수 있다.</p>
	<p>제14조(운영진 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p> <p>③ 운영진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 등에 참여한다.</p> <p>④ 분과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며 주민자치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p> <p>⑤ 간사는 주민자치회 활동 전반을 지원하며, 활동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⑥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4조(운영진 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p> <p>③ 운영진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 등에 참여한다.</p> <p>④ 분과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며 주민자치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p> <p>⑤ 간사는 주민자치회 활동 전반을 지원하며, 활동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⑥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5조(운영진 해임)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진은 제27조에 따라 정기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회의 또는 분과회의에 연 3회 무단 불참할 경우(단, 질환, 관혼상제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예외) 2. 운영진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자치회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 경우 	<p>제15조(운영진 해임)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진은 제27조에 따라 정기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회의 또는 분과회의에 연 3회 무단 불참할 경우(단, 질환, 관혼상제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예외) 2. 운영진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자치회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 경우
	<p>제16조(사임) 운영진, 자치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 제출한 익일부터 사임한 것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업무인수인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6조(사임) 운영진, 자치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 제출한 익일부터 사임한 것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업무인수인계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명칭	기존세칙	개정세칙(2023.6.22.)
	<p>제17조(궐위와 후임선출) 자치회장, 운영진 궐위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회장 궐위 시 조례에 따라 자치부회장이 남은 임기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2. 자치부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이면 공석으로 둔다. 3. 감사와 분과장 궐위 시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선출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p>제17조(궐위와 후임선출) 자치회장, 운영진 궐위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회장 궐위 시 조례에 따라 자치부회장이 남은 임기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2. 자치부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이면 공석으로 둔다. 3. 감사와 분과장 궐위 시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선출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제3장 총칙	<p>제18조(사무국)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자치회관 위수탁 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간사,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p> <p>③ 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p> <p>④ 사무국은 실무 진행시 해당 내용을 주민자치회 운영진 또는 위원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역량강화 지원 2. 기록물 생산 및 보존 3. 예산, 회계 및 지출 실무 4.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 5.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6. 주민자치회 사업 기획 및 실행 지원 7. 분과활동 활성화 및 운영 지원 8. 자치회관 위수탁 사무 9. 그 외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등 	<p>제18조(사무국)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자치회관 위수탁 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간사,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p> <p>③ 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p> <p>④ 사무국은 실무 진행시 해당 내용을 주민자치회 운영진 또는 위원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역량강화 지원 2. 기록물 생산 및 보존 3. 예산, 회계 및 지출 실무 4.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 5.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6. 주민자치회 사업 기획 및 실행 지원 7. 분과활동 활성화 및 운영 지원 8. 자치회관 위수탁 사무 9. 그 외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등
	<p>제19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의 보조를 받아 주민자치회 운영실무를 총괄한다.</p> <p>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채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 및 사업 기획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 3. 주민과 소통하며 응암1동 주민자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p>③ 사무국장에게는 활동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9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의 보조를 받아 주민자치회 운영실무를 총괄한다.</p> <p>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채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 및 사업 기획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 3. 주민과 소통하며 응암1동 주민자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p>③ 사무국장에게는 활동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p>

명칭	기존세칙	개정세칙(2023.6.22.)
제3장 총칙	<p>제20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를 구성한다.</p> <p>②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분과를 구성하며 자치회관 운영분과는 필수 분과로 구성한다.</p> <p>③ 분과위원회와 분과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주민자치회 위원 7명 이상을 필수 구성으로 한다.</p> <p>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장 및 분과 총무를 선출한다.</p> <p>⑤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공동사업 및 해당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역할을 수행한다.</p>	<p>제20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를 구성한다.</p> <p>②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분과를 구성하며 자치회관 운영분과는 필수 분과로 구성한다.</p> <p>③ 분과위원회와 분과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주민자치회 위원 7명 이상을 필수 구성으로 한다.</p> <p>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장 및 분과 총무를 선출한다.</p> <p>⑤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공동사업 및 해당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역할을 수행한다.</p>
	<p>제21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회의·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총회 정기회의 운영회의 민관협력회의 분과회의 <p>② 자치회장은 회의 종료 후 별도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람하여야 한다.</p> <p>③ 사무국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p> <p>④ 간사는 제1항의 2호부터 4호까지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각 분과는 5호의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분과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p>	<p>제21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회의·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총회 정기회의 운영회의 민관협력회의 분과회의 <p>② 자치회장은 회의 종료 후 별도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람하여야 한다.</p> <p>③ 사무국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p> <p>④ 간사는 제1항의 2호부터 4호까지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각 분과는 5호의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분과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p>
	<p>제22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다.</p> <p>② 주민총회는 개최 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전체 주민의 1% 이상 참석으로 한다(사전투표 포함). 주민총회의 정족수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단, 응암1동 소재의 사업자, 단체 소속 등 생활 주민도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킨다.</p> <p>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p> <p>④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p> <p>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p> <p>⑥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p>	<p>제22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다.</p> <p>② 주민총회는 개최 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전체 주민의 1% 이상 참석으로 한다(사전투표 포함). 주민총회의 정족수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단, 응암1동 소재의 사업자, 단체 소속 등 생활 주민도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킨다.</p> <p>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p> <p>④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p> <p>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p> <p>⑥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p>

명칭	기존세칙	개정세칙(2023.6.22.)
제3장 총칙	<p>제23조(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4번째 목요일에 개최하며, 조례에 따라 소집 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p> <p>② 위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세칙 및 세칙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위원의 해촉 요구 및 운영진의 선출 및 해임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운영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수입 · 지출 내역을 포함한 자치회관의 운영결과보고의 승인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p>③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 ·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p> <p>④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주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 단, 발언권은 갖지 않는다.</p> <p>⑤ 임시회의는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최하며 위 제2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p>제23조(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4번째 목요일에 개최하며, 조례에 따라 소집 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p> <p>② 위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세칙 및 세칙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위원의 해촉 요구 및 운영진의 선출 및 해임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운영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수입 · 지출 내역을 포함한 자치회관의 운영결과보고의 승인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p>③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 ·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p> <p>④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주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 단, 발언권은 갖지 않는다.</p> <p>⑤ 임시회의는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최하며 위 제2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p>제24조(운영회의) ① 운영회의는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개최한다.</p> <p>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운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③ 운영회의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단, 분과장 유고 시 분과 총무가 출석할 수 있다.</p> <p>④ 감사는 필요에 따라 출석한다.</p> <p>⑤ 운영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정기회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p>제24조(운영회의) ① 운영회의는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개최한다.</p> <p>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운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③ 운영회의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단, 분과장 유고 시 분과 총무가 출석할 수 있다.</p> <p>④ 감사는 필요에 따라 출석한다.</p> <p>⑤ 운영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정기회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명칭	기존세칙	개정세칙(2023.6.22.)
제3장 총칙	<p>제25조(민관협력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둔다.</p> <p>② 민관협력회의는 동장, 팀장, 동 담당자,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등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p> <p>③ 회의는 동장 또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p>	<p>제25조(민관협력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둔다.</p> <p>② 민관협력회의는 동장, 팀장, 동 담당자,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사무국장, 간사 등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p> <p>③ 회의는 동장 또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p>
	<p>제26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월 1회 정례회의로 개최하고, 다만, 필요 시 주민자치회의 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장이 소집한다. 단, 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가 필요 할 경우에는 분과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분과회의를 개최한다.</p>	<p>제26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월 1회 정례회의로 개최하고, 다만, 필요 시 주민자치회의 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장이 소집한다. 단, 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가 필요 할 경우에는 분과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분과회의를 개최한다.</p>
	<p>제27조(회의 의결) ① 위원은 회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은 가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②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세칙변경(제정 · 개정 · 폐지) 위원의 위촉 해촉 요구 및 운영진 해임 	<p>제27조(회의 의결) ① 위원은 회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은 가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②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세칙변경(제정 · 개정 · 폐지) 위원의 위촉 해촉 요구 및 운영진 해임
	<p>제28조(자치계획 수립) ① 사무국장은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해당 분과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진회의에 보고한다.</p> <p>② 운영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한다.</p> <p>③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월별 추진계획 평가계획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홍보 및 협업, 주민 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p>④ 주민자치회 및 구청이 주관하는 정책공유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 한다.</p> <p>⑤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8조(자치계획 수립) ① 사무국장은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해당 분과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진회의에 보고한다.</p> <p>② 운영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한다.</p> <p>③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월별 추진계획 평가계획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홍보 및 협업, 주민 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p>④ 주민자치회 및 구청이 주관하는 정책공유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 한다.</p> <p>⑤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명칭	기존세칙	개정세칙(2023.6.22.)
	<p>제29조(자치회관 운영) ① 자치회관 운영은 자치회관 운영 분과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민들이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③ 조례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3조의4까지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준용한다.</p>	<p>제29조(자치회관 운영) ① 자치회관 운영은 자치회관 운영 분과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민들이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③ 조례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3조의4까지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준용한다.</p>
	<p>제30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제30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제31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수탁금, 찬조금, 회비, 기탁물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강료는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3. 수익금은 자치회관 운영 및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4. 수탁금은 근린자치 실현을 위해 수탁 받은 사업 예산 5.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등이 후원한 예산 6. 회비는 자치위원들이 상 · 하반기 납부하는 수입으로, 회비는 월 10,000원으로 한다. 회비의 집행은 [부칙 제4조]에 따른다. 	<p>제31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수탁금, 찬조금, 회비, 기탁물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강료는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3. 수익금은 자치회관 운영 및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4. 수탁금은 근린자치 실현을 위해 수탁 받은 사업 예산 5.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등이 후원한 예산 6. 회비는 자치위원들이 상 · 하반기 납부하는 수입으로, 회비는 월 20,000원으로 한다. <p>회비의 집행은 [부칙 제4조]에 따른다.</p>
제4장 총칙	<p>제32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사무국에서 관리하되,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 · 지출 내역을 보고한다.</p> <p>② 회장은 주민총회 시 수립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재정지출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하며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 100,000원 이내는 선 집행 후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32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사무국에서 관리하되,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 · 지출 내역을 보고한다.</p> <p>② 회장은 주민총회 시 수립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재정지출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하며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 100,000원 이내는 선 집행 후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33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p>	<p>제33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p>
	<p>제34조(결산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회의에 결산 보고 한다.</p>	<p>제34조(결산보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회의에 결산 보고 한다.</p>

명칭	기존세칙	개정세칙(2023.6.22.)
	<p>제35조(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한다.</p> <p>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을 새로 하거나 고치거나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p> <p>③ 회장은 사무국에서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직인 날인 사항을 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5조(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한다.</p> <p>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을 새로 하거나 고치거나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p> <p>③ 회장은 사무국에서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직인 날인 사항을 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p>
제4장 총칙	<p>제36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위·해촉·사임 대장 2. 주민자치회 회의록 3. 주민자치회 직인대장 4. 문서접수 접수 및 발급 대장 5. 문서등록 대장 6. 각종 회계장부 7. 사업계획서 8.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p>②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p>	<p>제36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위·해촉·사임 대장 2. 주민자치회 회의록 3. 주민자치회 직인대장 4. 문서접수 접수 및 발급 대장 5. 문서등록 대장 6. 각종 회계장부 7. 사업계획서 8.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p>②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p>

명칭	기존세칙	개정세칙(2023.6.22.)
	<p>부 칙(2022. 3. 24.)</p> <p>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2022. 3. 24.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내규)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사항은 내규로 정하고 내규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다.</p> <p>제3조(경과조치) 주민자치회는 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운영 세칙을 개정한다.</p> <p>제4조(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비는 매월 10,000원으로 정하되, 납부는 계좌로 6개월치씩 일시 납부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관협력 행사 시 단체 회비 200,000원 (축제, 체육대회, 자매결연지 방문 등) 2. 애경사 경비 200,000원 (자녀의 결혼 시, 본인 · 배우자 · 부모 · 자녀 사망 시) 3. 현금성 경비 (택배, 퀵비, 택시비, 세탁비 등의 현금결제 등) 4. 기타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 ③ 10,000원 미만으로 경미한 지출 시 선결제한 후에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회계연도가 끝나면 잔액에 대해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회비 미납 위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p>	<p>부 칙(2023. 6. 22.)</p> <p>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2022. 3. 24.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내규)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사항은 내규로 정하고 내규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다.</p> <p>제3조(경과조치) 주민자치회는 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운영 세칙을 개정한다.</p> <p>제4조(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비는 매월 <u>20,000원</u>으로 정하되, 납부는 계좌로 6개월치 <u>또는 12개월치</u> 일시 납부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관협력 행사 시 단체 회비 200,000원 (축제, 체육대회, 자매결연지 방문 등) 2. 애경사 경비 200,000원 (자녀의 결혼 시, 본인 · 배우자 · 부모 · 자녀 사망 시) 3. 현금성 경비 (택배, 퀵비, 택시비, 세탁비 등의 현금결제 등) 4. 기타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 ③ 10,000원 미만으로 경미한 지출 시 선결제한 후에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회계연도가 끝나면 잔액에 대해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회비 미납 위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p>

2023년도 응암1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결과보고서

발행일 : 2024. 1

발행처 : 응암1동 주민자치회

발행인 : 주민자치회장 이광희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179

응암1동주민센터 2층

연락처 : 02-351-3824~5

제 작 : 참디자인



응암1동 주민자치회

(03462)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179(응암동)

복지행정팀 : 02-351-5212 응암1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 02-351-3824~5